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9 선고 2021가단670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7112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9 선고 2021가단67087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화, 박세령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정진규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가 2019. 1. 1.경 체결한 147,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942)를 제기하여, 2015. 11. 18. ‘C는 원고에게 133,400,000원과 그중 33,440,00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1)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2015. 12. 28. 주식회사 D(이하 D)으로부터 광명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570,000,000원에 분양받았다.

(2) 2018. 12. 4. 기준 피고의 주식회사 G(이하 G은행) 계좌의 잔액은 9,714,107원이었는데 2019. 1. 1. 기준 위 계좌의 잔액은 147,000,000원 이상이었다. 피고는 2019. 1. 1. 위 G은행 계좌에서 H은행계좌로 147,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9. 1. 3.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 3.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으로부터 34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9. 4. 15. H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H은행, G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G은행 계좌의 잔액이 2018. 12. 4.부터 2019. 1. 1.까지 약 147,000,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C가 원고에 대하여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9. 1. 1.경 피고에게 잔대금 등 상당액인 147,000,000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영업이익은 상당하였으므로, 위 돈은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C는 위 금전증여계약 당시 무자력이었으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위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2019. 1. 1. 금전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2018. 12. 4.부터 2019. 1. 1.까지 피고의 G은행 계좌로 최소한 137,285,893원(= 2019. 1. 1. 출금액 147,000,000원 - 2018. 12. 4. 잔액 9,714,107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위 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의 법리에 따라 2019. 1. 1.경 피고가 G은행 계좌의 잔액이 증가한 이유, 즉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이는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판례는 증여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¹⁾의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2) 세법상 증여개념을 토대로 한다. 세법상 증여3) 개념은 민법상 증여개념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의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역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과세현장 내지는 그 담세력을 파악하여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세하는가에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위와 같이 추정된다고 하여 민법상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1)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판례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상속세법 제34조의6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중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증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는데, 원고가 든 판례도 이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